# 오프캠퍼스운영규정 5-1-50

규정번호 5-1-50
제정일자 2019.10.21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2차 개정
관리부서 글로벌교육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오프캠퍼스(Off-Campus, OC, 교외학기제)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'오프캠퍼스'란 재학기간 중 1학기 이상(계절학기 포함)을 국내·외 교류대학 및 산업체에 파견하여 전공과 관련된 산학실습 및 외국어연수 등의 현장·전문형 교육과정을 통해 글로컬(Global+Local)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.

제3조(운영위원회 구성) ① 오프캠퍼스 운영 및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프캠퍼스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글로벌교육센터장, 교무처장, 산학협력처장, 학생지원처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22.6.8.,2024.7.24)

③ 위원장은 글로벌교육센터장이 되고, 위원장이 간사를 지명한다.

④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.

1. 오프캠퍼스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
2. 오프캠퍼스 프로그램 및 과목 개설 신청에 대한 심의
3. 장학지원금 등 오프캠퍼스 참가자에 대한 지원 관련 사항
4. 기타 오프캠퍼스와 관련된 주요 사항

제4조(학기 설치) ① 오프캠퍼스는 학기 프로그램과 방학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.

② 학기프로그램은 정규학기 또는 별도의 학기에 설치·운영하며, 방학 프로그램은 계절학기에 설치· 운영한다.

제5조(교과목 편성 및 개설) ① 오프캠퍼스 교과목은 일반선택 또는 교양과정으로 편성·개설할 수 있다.

② 오프캠퍼스 관련 교과목은 해당 부서별로 편성·운영한다.

③ 오프캠퍼스 교과목은 오프캠퍼스 운영을 위하여만 개설하며, 해당 교과목은 학부(과)별 전공과정 편성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.

④ 오프캠퍼스 교과목별 최저, 최고 수강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수강자격 및 수강신청) ① 오프캠퍼스 참여 학생선발 및 수강신청 자격 관련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 학기 프로그램 참가자는 해당 학기에 참가하는 오프캠퍼스 프로그램에서 개설한 교과목을

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방학 프로그램 참가자는 해당 계절학기에 참가하는 오프캠퍼스 프로그램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.

④ 오프캠퍼스 수강학생의 수강신청은 대학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.

제7조(프로그램 이수) ① 학기 프로그램의 경우 해당 학기를 모두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.

② 단, 정규학기와 별도의 학기를 연계하여 구성한 프로그램 참가자가 정규학기 이수 후 별도의 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 정규학기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한다.

제8조(학점) ① 학기 프로그램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총 18학점까지로 한다.

② 방학 프로그램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계절학기 중 6학점까지로 한다.

③ 오프캠퍼스 수강학생의 취득학점은 학생성적평가위원회 학점인정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제9조(납입금) ① 학기 프로그램 참가학생은 별도의 학기 수강신청 시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, 방학 프로그램 참가학생은 계절학기 수강신청 시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. 납입금은 결석 등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.

② 납입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를 적용하여 반환한다.

제10조(참가 교원의 자격) ① 오프캠퍼스 제안 및 참가 교원의 자격은 전임교원 이상으로 한다.

② 참가교원이 교외파견을 인솔할 경우 학생 안전 및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보조 인솔자를 둘 수 있다.

제11조(지원금 등의 지급) 참가 교수 및 학생의 지원금 및 기타 필요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한다.

제12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내규 등 우리대학 관련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,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16> (생략)

<17> 오프캠퍼스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의 "진로취업지원센터장"을 "진로취·창업센터장"으로 변경한다.

<18> - <25> (생략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2항)